

2020년도 제4회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 발언자 | 발언내용 |
|-------------------|---|
| 위원장 | 성원이 되었는지 보고해주십시오. |
| 간사 | (성원 보고) |
| 위원장 | (개회선언 및 전차 회의결과 요약 보고 요청) |
| 간사 | <2020년도 제3회차 계약심의위원회 요약 보고> |
| 위원장 | 의안번호 제2020-05호 “제주삼다수 및 휘오제주 파레트간지(양면골판지)제조·구매” 계약방법 등 심의의 건 상정 |
| 제안부서장 (설비자재팀장) | < 제2020-05호 부의안건 설명 > |
| 위원장 | 각 위원별 의견 개진 요청 |
| ◆ ◆ ◆ 위원 | 이 골판지 관련해서 KS 규격이 없습니까? |
| ◎ ◎ ◎ 과장 | 작년까지는 KS규격으로 사용을 하다가, 습기에 더 강한 제품을 찾다 보니까 품질관리팀에서 재질을 선정한 사항입니다. |
| ◆ ◆ ◆ 위원 | KS규격보다 더 강화된 규격으로 사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 ◎ ◎ ◎ 과장 | 네, 그렇습니다. |
| ◆ ◆ ◆ 위원 | 사전품질검사를 입찰공고 하듯이 특정시기에 신청 받아서 한번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 년 내내 언제든지 신청을 하고 통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
| ◎ ◎ ◎ 과장 | 매년 초에 나라장터를 통해서 사전품질테스트 공고를 해서, 6월 30일까지 횟수는 최대 3회까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되는 대로 바로 테스트해서 불합격이 나오면, 업체가 다시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최대 3번까지 주고 있습니다. |

| 발언자 | 발언내용 |
|-------------|--|
| ◆ ◆ ◆ 위 원 | 6월 30일 이후에 골판지를 만드는 회사가 새로 생겨도 그 해에는 납품의 자격을 갖출 수 없는 상황인거죠? |
| ◎ ◎ ◎ 과 장 | 테스트 기간이 보통 두 달에서 최대 3달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6월 이후에 저희가 접수를 받게 되면 후속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염려가 있어서 6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
| 위 원 장 | 구매 수량이 단가계약으로 해서 연간 수요량에 대해서 한 번에 입찰하는 거죠? |
| 설 비 자 재 팀 장 | 네, 그렇습니다. |
| ♣ ♣ ♣ 위 원 | 큰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물량공급에 문제는 없습니까? |
| 설 비 자 재 팀 장 | 최근 팔레트간지의 골심지를 만드는 업체 화재로 골심지 가격 상승요인이 있고, 간지도 가격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급에는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고, 가격에는 인상요인이 있어서 이 부분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
| ▣ ▣ ▣ 위 원 | 휘오제주 2L규격하고, 삼다수 2L 규격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 ◆ ◆ ◆ 위 원 | 병 디자인 자체가 다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한 사이즈입니다. |
| 설 비 자 재 팀 장 | 병 디자인 때문에 적재하는 패턴이 달라집니다. 쌓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전체적으로 플레이트 넓이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
| ▣ ▣ ▣ 위 원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 물품인 경우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원부자재의 경우는 사전품질검사를 받아서 제한경쟁으로 하고, 최저가입찰로 한다는 것이 다 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표준화된 사항에 대해서 계약심의에서 추가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위 원 장 | 낙찰자 결정방법을 최저가 입찰제로 해서 본 계약목적물을 구매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심의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

| 발언자 | 발언내용 |
|--------|--|
| 간 사 | 계약심의 자체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내부규정에 내용이 있다고 생략할 수 있는지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 설비자재팀장 | 저희의 조사내용이 적절한지, 특수조건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같이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위원 | 계약특수조건 자체에 보시면 최저가에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낙찰자로 선정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제12조를 활용해서 변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 위원장 |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급업체의 사정을 조사 후 반영했고, 그것을 기초로 계약을 하지만 1년 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중 또 이런 예기치 못한 일이 있다면 변경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 ○○○ 위원 | 제주개발공사 회계규정에 따라서 최저가로 결정 한다고 되어있는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 위원장 | 누구나 인정할 만한 큰 폭의 가격변동이 있는 경우에 가격변경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 가격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
| ♣♣♣ 위원 | 공사계약에 있어서도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을 합니다. |
| 간 사 | 원부자재 계약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에 있어서 저희가 해줘야하는 부분입니다. |
| ○○○ 위원 | 공사가 계약상대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사전규격에서 제시한 내용을 구비하면서도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를 일단 계약상대자로 정해 놓고, 그 다음에 계약의 이행기간 동안 공급원가의 변동에 대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금액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소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최저가 낙찰제와 배치된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대자를 정함에 있어서 누구를 할 것이냐 하는 점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정하고, 그래서 이제 계약의 이행 과정 중에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인한 공급원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합리성의 측면에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

| 발언자 | 발언내용 |
|----------|--|
| 위원장 | 계약의 이행기간이 일회성으로 납품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보니까 그 사이에 가격이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는 건데, 일정 기준 이상에 되면 금액을 변경시켜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 ◆ ◆ ◆ 위원 |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은 가격상승에 대해서만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가격이 곧 서서히 인하될 요인이 많아 보입니다. 가격상승 뿐만 아니라 가격하락 부분도 같이 명시를 하시는 게 공사 측 입장으로서는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
| 위원장 | 네.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 ◆ ◆ ◆ 위원 | 네. 지금 감액 사유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
| ◆ ◆ ◆ 위원 | 제12조에서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계약상대자로만 되어 있으니 공사도 같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견적 말고 원가계산을 해보셨는지, 지금까지 계속 공급을 받아 오셨을 텐데 원가계산을 실시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 설비자재팀장 | 저희가 이 건을 최저가입찰로 진행함에 있어서 견적으로 진행했고, 원가계산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
| ◆ ◆ ◆ 위원 | 최저가로 입찰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로 들어오면 낙찰되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안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 설비자재팀장 | 아직까지는 원가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
| ◆ ◆ ◆ 위원 | 원가계산을 하지 않으시면 가격 상승과 하락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건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약이전이 아니라 계약 이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을 해 놓으신 상황에서 가격변동에 대한 근거를 삼으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

| 발언자 | 발언내용 |
|--------|--|
| 위원장 | <p>낙찰자가 선정된 이후에 계약하기 이전에, 어차피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산정을 해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가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등에 대해서 계약특수조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산정을 해놓고 최종 계약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적용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공급가보다는 낙찰업체로부터 공급원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충분히 검증해서 상호합의된 원가계산을 첨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이 조건들을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p> |
| ○○○ 위원 | <p>제9조에 현장점검 관련 내용이 있는데, 제2항에서는 ‘계약상대자는 개발공사의 제조공장 점검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있고, ‘붙임 1. 원부자재 협력업체 점검표’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붙임 1 점검표에 따라서 점검할 것이니 참고하라는 뜻인 건가요? 이 부분은 마무리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4항에서는 ‘현장점검결과는 평가에 반영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원부자재 사전품질검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다. ※ 당해연도 계약이행능력심사 50점 만점에 15점 적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인가요?</p> |
| 간사 | <p>제4조 같은 경우 50점 만점에 15점에 해당한다는 것을 강조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매끄럽게 조정하겠습니다.</p> |
| ○○○ 위원 | <p>제10조 제3항에 보면, 자연이자가 연15.5%로 되어있는데요, 이자율이 많이 바뀌어서 15.5%로 된 건가요? 법령에 따라 정하신건가요?</p> |
| 위원장 | <p>숫자를 명시할 안 하더라도, 자연이자는 ‘~를 기준으로 한 자연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명시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이 부분은 근거가 확실히 있을 것입니다.</p> |
| 위원장 | <p>○○○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숫자를 명시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어떤 법령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그 법령이 변경되면 자연이자율도 따라서 변경이 되도록 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p> |

| 발언자 | 발언내용 |
|-----------|---|
| ◆ ◆ ◆ 위 원 | 지방계약 예규에 있네요. 대가지급 지연에 관한 이자부분입니다. 만약에 다른 조항에 없다면, 이 조항을 명시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예규를 공사에서 따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 간 사 | 네. 지방계약법을 따르는데, 이 건은 하도급법을 우선으로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하도급법 관련 조항을 넣어서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
| 위 원 장 | 저희가 이번에 CP,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했거든요. 지방 공기업 중에서 저희가 처음 도입했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감안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아졌습니다. |
| ● ● ● 위 원 | 제10조 제4항 제3호를 보시면, 제10조 지역개발공채매입 참조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디에 10조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 부분도 매끄럽게 보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 위 원 장 | <p>네. 충분히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말씀주신 것들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p> <p>계약특수조건 제9조 제4항 ‘※’ 표시된 부분의 문구를 정확하게 내지는 매끄럽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p> <p>제10조 제3항에 15.5%라고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해서 근거를 반영해주시기 바라고, 역시 제10조 제4항 제3호 지역개발 공채 관련 부분에도 뜬금없이 제10조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근거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p> <p>제12조에서 계약금액의 조정 부분에서 본 계약특수조건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만 금액변경 조정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쌍방이 모두 요구할 수 있도록 요구주체를 정확히 명기해주시고, 계약금액의 변경 필요 시 그 근거가 되는 원가계산은 계약체결 이전에 쌍방이 검토 및 합의된 내용을 반영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p> <p>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주시겠습니까?</p> |
| 위 원 들 | 네. |
| 위 원 장 | 동의를 있으므로 의안번호 제2020-05호 “제주삼다수 및 휘오제주 파레트간지(양면골판지)제조·구매” 계약방법 등 심의 건은 일부 수정·보완을 전제로 원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